



특수 교육에 대한 부모 및 자녀의 권리

절차상 보호 장치 고지사항

장애인 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및
특수 아동 교육법(ECEA, Exceptional Children's Educational Act)의
집행을 위한 콜로라도 주 규칙의 조항을 근거로 적용 가능한 절차상
보호 장치에 대한 설명

장애 학생의 교육에 관한 연방법인 장애인 교육법(IDEA)에 따라 학교에서는 장애 학생의 부모에게 IDEA 및 미 교육부 규정을 근거로 적용 가능한 절차상 보호 장치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포함된 고지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고지의 사본은 학년마다 1회 학부모에게 교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본이 교부되어야 합니다. (1) 최초 문의 또는 학부모의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2) 주에 항의 사항이 처음 접수되거나 학년도에 항의 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처음 부과된 경우 (3) 학교 배정 변경에 해당하는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4)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34 CFR §300.504(a)]



콜로라도 주 교육부

IDEA 및 ECEAP 조항에 따른
절차상 보호 장치 고지
2011년 1월 7일 개정

목차

일반정보	1
사전 서면 고지	1
모국어	2
이메일	2
학부모 동의 - 정의	2
학부모 동의	3
독립적 교육 평가	5
정보의 기밀성	6
정의.....	6
개인 식별 정보	7
학부모에 대한 고지	7
액세스 권한	7
액세스 기록	8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의 기록.....	8
정보 유형 및 위치 목록	8
수수료	8
학부모 요청 시 기록 수정	8
심의회 기회	9
심의회 절차	9
심의회 결과	9
개인 식별 정보 공개 동의	9
보호 장치.....	10
정보 파기.....	10
주 정부 항의 제기 절차	10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를 통한 항의 처리 절차와 주 정부 항의 처리 절차 간의 차이점.....	10
주 정부 항의 제기 절차의 채택	11
최소한의 주 정부 항의 제기 절차.....	11
항의 접수.....	12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제기 절차	13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접수	13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제기	13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제기 및 심의회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의 학교 배정	15
양식의 예.....	15
중재.....	16
해결 절차.....	17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에 관한 심의회	19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	19
심의회 권리	20
심의회 결정	20
최종 결정.....	21
심의회와 검토의 기한 및 편의성	21
민사 소송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22
변호사 보수	22

장애 아동 징계 시 절차.....	24
학교 교직원의 권한	24
징계 이동으로 인한 학교 배정 변경	26
환경의 결정	27
이의 제기(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속 처리된 심의회 절차).....	27
이의 제기 기간 동안 학교 배정	28
아직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대상이 아닌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28
법률 집행 기관 및 사법 당국으로 위탁 및 해당 기관의 조치.....	29
학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학생을 사립 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정하기 위한 요건.....	30
일반.....	30
학부모용 자료	

일반정보

사전 서면 고지

34 CFR §300.503

고지

행정 단위¹ 또는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²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서면 고지(특정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함)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자녀의 신원 확인, 평가, 학교 배정이나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 제공을 시작하거나 변경하도록 제안하는 경우 또는
2. 자녀의 신원 확인, 평가, 학교 배정이나 FAPE 제공을 시작하거나 변경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고지 내용

서면 고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행정 단위³에서 집행을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조치에 대한 설명
2. 행정 단위에서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3. 행정 단위에서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에 사용한 각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또는 보고에 대한 설명
4. 장애인 교육법(IDEA) Part B 절차상 보호 장치 조항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다는 진술서
5. 행정 단위에서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조치가 최초의 평가 문 의가 아닌 경우 절차상 보호 장치에 대한 설명을 어떤 경로로 입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
6. IDEA Part B 규정의 이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문의해야 하는 리소스에 대한 정보
7. 학생 별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IEP) 팀에서 고려한 다른 선택 항목 및 그러한 선택이 거부된 이유에 대한 설명 및
8. 행정 단위에서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한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된 고지

고지 요건:

1.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함 및
2. 모국어 또는 모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¹ 행정 단위란 교육구, 협력 서비스 위원회 또는 주 정부에서 인가한 교육 기관으로 특수 아동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² 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란 교육부에서 감독하고 콜로라도 시청각 장애인 학교(Colorado School for the Deaf and the Blind),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 또는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서 운영하는 승인 받은 학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청소년 교정국(Division of Youth Corrections) 및 Fort Logan 및 Pueblo에 있는 정신 건강 연구소(Mental Health Institutes)가 포함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음).

³ 본 문서의 목적에 부합하여 "행정 단위"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에는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모국어 또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이 서면이 아닌 경우 행정 단위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고지가 다른 방법으로 모국어나 다른 의사소통 방식으로 구두로 통역되는지 여부
2. 당사자가 고지 내용을 이해하는지 여부 **및**
3. 위의 1, 2가 충족되었다는 서면 증거물이 있는지 여부

모국어

34 CFR §300.29

모국어라는 용어가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적용되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1.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거나 아동의 경우 아동의 부모가 일반적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2. 아동과의 모든 직접적 접촉(아동에 대한 평가가 포함됨)에서 아동이 가정이나 학습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청각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문자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예: 수화, 점자 또는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

이메일

34 CFR §300.505

행정 단위에서 학부모에게 이메일로 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안하는 경우 이메일 수신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서면 고지
2. 절차상 보호 장치 고지 **및**
3.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제기 관련 공지.

학부모 동의 - 정의

34 CFR §300.9

동의를 의미:

1. 모국어 또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예: 수화, 점자 또는 구두 의사소통)으로 동의하려는 조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숙지함
2. 그러한 조치를 이해하고 조치에 서면으로 동의하며 동의서에 조치에 대한 설명 및 공개되는 기록(있는 경우)의 목록 및 공개 대상이 기술됨
3. 귀하의 동의가 자발적 동의임을 알고 있으며 언제든지 동의를 취소(철회)할 수 있지만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동의한 후 철회하기 전에 발생한 조치가 무효(실행 취소)로 되지 않음
4. 자녀의 특수 교육 서비스 수락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철회(취소)하는 경우(자녀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후) 행정단위에서 학생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았다는 언급을 삭제하기 위해 학생의 교육 기록을 수정(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부모 동의
34 CFR §300.300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

행정 단위는 제안된 조치에 대한 사전 서면 고지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전 서면 고지 및 학부모 동의**라는 제목 아래에 명시된 동의를 얻지 않고 학생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IDEA Part B** 조항의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한 학생에 대한 초기 평가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행정 단위는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판단하기 위한 초기 평가에 대해 학부모로부터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초기 평가에 대한 학부모가 동의하더라도 행정 단위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하기 시작하도록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행정 단위는 학부모가 초기 평가와 관련된 개별 서비스나 활동에 동의하기를 거부하더라도 다른 **Part B** 요건으로 행정 단위에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학부모 또는 학생에 대한 다른 서비스, 혜택 또는 활동을 허락하지 않을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이미 공립학교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하려고 하는데 초기 평가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동의서 제출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행정 단위에서 **IDEA**의 중재 또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제기, 해결 회의 및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 절차를 활용하여 학생에 대한 초기 평가의 수행을 시도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요구되거나 그리하는 것이 주 법률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행정 단위는 주 법률에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러한 상황에서 학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학생을 찾아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정부 피보호자의 초기 평가에 대한 특수 규정

학생이 주 정부 피보호자이고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 단위에서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판단하기 위한 초기 평가에 대해 학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단위에서 학생의 부모를 찾을 수 없는 경우
2. 주 법률에 따라 학부모의 권리가 종료된 경우 **또는**
3. 판사가 부모 외 다른 사람에게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초기 평가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한 경우

주 정부의 피보호자는 **IDEA**에서 사용된 것처럼 학생이 거주하는 주에서 결정한 다음에 해당하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1. 위탁 아동
2. 주 법률에 따라 주 정부의 피보호자로 간주되는 아동 **또는**
3. 공공 아동 복지 기관의 보호를 받는 아동

주 정부 피보호자에는 양부모가 있는 위탁 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동의

행정 단위에서는 학생에게 처음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학부모로부터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행정 단위는 학생에게 처음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학부모로부터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가 처음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도록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그러한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나중에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취소)하는 경우 행정 단위는 IEP 팀에서 추천한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합의 또는 결정을 얻기 위해 절차상 보호 장치(예: 중재 절차,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제기, 해결 회의 또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처음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도록 동의서를 제출을 거부하거나 그러한 동의서 제출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나중에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취소)하여 그 결과 행정 단위에서 동의를 구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자녀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행정 단위는 다음에 해당하게 됩니다.

1. 학생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을 제공해야 하는 요건을 위반한 것이 아님 및
2.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IEP) 회의를 개최하거나 동의서가 요청된 특수 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와 관련하여 학생에 대한 IEP를 개발해야 할 책임이 없음

학생에게 처음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된 후 언제든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취소)하는 경우 행정 단위는 그러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지만 서비스를 중지하기 전에 **사전 서면 공지**라는 제목 아래 명시된 사전 서면 고지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재평가에 대한 학부모 동의

행정 단위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학생을 재평가하기 전에 학부모로부터 정보를 바탕으로 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학생의 재평가에 대해 학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 **및**
2. 학부모가 응답하지 않음

학생에 대한 재평가에 동의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 단위는 학생 재평가에 대한 학부모 동의 거부를 무시하려는 의도에서 중재,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제기, 해결 회의 및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 절차를 사용하여 학생에 대한 재평가를 추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정 단위는 이런 식으로 재평가를 수행하기를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IDEA Part B 조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동의를 얻기 위한 합리적 노력의 기록

행정 단위는 처음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평가하며, 초기 평가를 위해 주 정부 피보호자의 부모를 찾는 등 초기 평가에 대한 학부모 동의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에 대한 문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행정 단위의 위 영역과 관련된 노력의 기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록이 포함됩니다.

1. 전화 통화 또는 통화 시도 및 통화 결과에 대한 자세한 기록
2. 학부모에게 발송된 서신과 반송된 답변의 사본 **및**
3. 학생 가정 또는 부모 직장 방문 및 그러한 방문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기록

기타 동의 요건

행정 단위에서 다음을 수행한 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1. 학생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부로 기존 데이터 검토 또는
2. 학생에게 테스트 또는 재평가 전에 일부 학생 부모의 동의서만 필요한 경우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테스트 또는 기타 평가의 제공

행정 단위는 학부모 본인 및 자녀의 기타 서비스, 혜택 또는 활동 제공을 거부하기 위해 단일 서비스나 활동에 동의하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자녀를 사립학교에 입학시켰거나 자녀를 가정에서 홈 스쿨링으로 교육 하는데 자녀의 초기 평가 또는 재평가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행정 단위는 동의 무시 절차(예: 중재,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제기, 해결 회의 및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당한 서비스(예: 부모가 배정한 사립학교에 등록된 장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립적 교육 평가 34 CFR §300.502

일반

아래에 명시한 대로 행정 단위에서 입수한 학생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녀에 대한 독립적 교육 평가(IEE,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가 IEE를 요청할 경우 행정 단위는 IEE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IEE에 적용되는 행정 단위의 기준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정의

독립적 교육 평가란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행정 단위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공인된 검사관이 수행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공공 비용이란 각 주에서 IDEA Part B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에서 이용 가능한 주, 연방 및 민간의 지원 중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의 Part B 조항에 따라 행정 단위에서 평가 비용 전액을 지불하거나 다른 식으로 학부모 부담 없이 평가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 비용으로 평가 받을 학부모의 권리

행정 단위에서 입수한 학생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공공 비용으로 자녀에 대한 IEE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학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자녀의 IEE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행정 단위는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않고 다음의 조치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a) 학생에 대한 행정 단위의 평가가 적절함을 보여주기 위해 공청회를 요청하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제기 또는 (b) 행정 단위에서 입수한 학생의 평가가 행정 단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심의회에서 입증하지 않는 한 공공 비용으로 IEE 평가 제공
2. 행정 단위에서 심의회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행정 단위의 학생 평가가 적절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학부모는 IEE 평가를 받을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 공공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3. 자녀의 IEE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행정 단위에서 입수한 자녀의 평가에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단위는 학부모가 설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공공 비용으로 학생의 IEE 평가를 제공하거나 행정 단위의 학생 평가 결과를 옹호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를 요청하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를 제기하는 것을 부당하게 연기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는 행정 단위에서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학생 평가를 수행한 1회당 1회에 한해 공공 비용으로 독립적 교육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의 요청에 의한 평가

공공으로 자녀의 독립적 교육 평가를 받거나 학부모가 개인 비용으로 받은 학생 평가를 행정 단위와 공유하는 경우:

1. 행정 단위는 행정 단위의 IEE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 제공에 관한 결정에서 학생 평가 결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및**
2. 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는 학생에 관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에서 평가 결과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의관의 평가 요청

행정 심의관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의 일부로 학생의 독립적 교육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평가 비용은 공공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행정 단위 기준

독립적 교육 평가가 공공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평가 장소, 검사자의 자격 여부 등 평가가 수행된 기준은 행정 단위에서 평가를 수행할 때 사용한 기준과 동일해야 합니다(단, 기준이 학부모의 독립적 교육 평가를 요청할 권리와 일치해야 합니다).

위에 명시된 기준을 제외하고 행정 단위는 공공 비용으로 처리된 독립적 교육 평가와 관련하여 조건이나 기한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의 기밀 유지

정의

34 CFR §300.611

정보의 기밀 유지라는 제목으로 사용된 정의:

파기란 정보가 더 이상 개인 식별이 가능하지 않도록 정보에서 개인 식별자를 물리적으로 파기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 기록이란 34 CFR Part 99(가족 교육 권리 및 프라이버시 법, 1974, 20 U.S.C.1232g (FERPA))의 시행을 위한 규정의 “교육 기록” 정의에 포함되는 기록 유형을 말합니다.

참여 기관이란 IDEA Part B에 따라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유지 관리 또는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공공 기관이나 협회를 말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
34 CFR §300.32

개인 식별 정보란 다음이 포함된 정보를 말합니다.

- (a) 학생의 이름, 학부모 이름 또는 다른 가족의 이름
- (b) 학생 주소
- (c) 학생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학생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 정보 또는
- (d) 개인적 특성이나 합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목록

학부모에 대한 고지
34 CFR §300.612

콜로라도 주 교육부(CDE, Colorado Department of Education)는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 유지에 관해 학부모에게 완전히 알리기 위해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1. 주의 다양한 인구 집단에 해당하는 모국어로 고지가 제공되는 범위에 대한 설명
- 2. 개인 식별 정보가 유지 관리되는 학생, 수집된 정보 유형, 주 정부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방법(정보 수집 출처가 포함됨) 및 정보 사용에 관한 설명
- 3. 참여 기관이 개인 식별 정보의 보관, 제3자에 대한 공개, 보존 및 파기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정책 및 절차 요약 및
- 4. 가족 교육 권리 및 프라이버시 법(FERPA,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및 34 CFR Part 99의 법률 시행 규정에 따른 권리를 포함하여 이 정보에 관한 학부모 및 학생의 모든 권리에 대한 설명.

대부분의 신원 확인, 소재지 찾기 또는 평가 활동(다른 말로 “학생 찾기”)을 수행하기 전에 주 전체에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을 찾고, 신원을 확인한 후에 평가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에게 고지하기에 적합한 판매 부수를 가진 신문이나 기타 매체, 또는 둘 모두에 고지가 게시되거나 발표되어야 합니다.

액세스 권한
34 CFR §300.613

참여 기관은 IDEA Part B에 따라 행정 단위에서 수집, 유지 관리 또는 사용되는 학생에 관한 교육 기록을 학부모가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참여 기관은 불필요하게 지연하지 않고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관련 회의 또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해결 회의 또는 징계 관련 심의회 포함) 이전(어떤 경우에도 학부모의 요청 후 45일을 넘지 않음)에 자녀의 교육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하려는 학부모의 요청에 부응해야 합니다.

학부모의 교육 기록 조사 및 검토 권리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 1. 학부모의 합리적인 기록 설명 및 해석 요청에 대해 참여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권리
- 2. 교육 기록의 사본을 입수하지 못하면 기록을 효과적으로 조사 및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참여 기관이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및

3. 대리인이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권리

참여 기관은 후견인으로서 문제가 되는 해당 주 정부 법률, 또는 별거 및 이혼으로 인해 권리가 없음을 통보 받지 않는 한 학부모에게 자녀의 교육 기록을 조사 및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기록

34 CFR §300.614

각 참여 기관은 IDEAE Part B에 따라 수집, 유지 관리 또는 사용되는 교육 기록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당사자에 대해 당사자의 이름, 액세스가 허용된 날짜, 당사자가 기록을 사용하도록 허가된 목적을 포함한 기록(학부모 또는 참여 기관의 권한 있는 직원에 의한 액세스인 경우에는 예외임)을 보관해야 합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의 기록

34 CFR §300.615

교육 기록에 두 명 이상 자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자녀에 관한 정보만을 조사 및 검토하고 그러한 특정 정보에 대해 알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 유형 및 위치 목록

34 CFR §300.616

각 참여 기관은 요청을 받으면 기관에서 수집, 유지 관리 또는 사용되는 교육 기록의 유형 및 위치 목록을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수수료

34 CFR §300.617

각 참여 기관은 수수료로 인해 기록을 조사 및 검토할 학부모의 권리 행사가 방해되지 않는 한 IDEAE Part B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된 기록 사본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관은 IDEAE Part B에 따라 정보 검색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 요청 시 기록 수정

34 CFR §300.618

IDEAE Part B에 따라 수집, 유지 관리 또는 사용된 자녀에 관한 교육 기록의 정보가 부정확하고, 오해하게 만들거나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또는 다른 권리를 위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참여 기관에 정보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관은 요청이 접수된 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요청에 따라 정보를 변경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참여 기관에서 요청에 따라 정보를 변경하기를 거절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거부 사실을 고지하고 **심의회 기회**에 명시된 대로 이 목적과 관련하여 심의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학부모에게 알립니다.

심의회 기회

34 CFR §300.619

참여 기관은 요청을 받은 경우 학생에 관한 교육 기록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하도록 만들거나 달리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또는 기타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 기록의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는 심의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심의회 절차

34 CFR §300.621

교육 기록의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는 심의회는 가족 교육 권리 및 프라이버시 법(FERPA)에 따른 심의회 관련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심의회 결과

34 CFR §300.620

참여 기관이 심의회 결과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하도록 만들거나 달리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또는 기타 권리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그에 따라 정보를 변경한 후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참여 기관이 심의회 결과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하도록 만들거나 달리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또는 기타 권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에 관해 유지 관리하는 기록에 정보에 관한 의견을 밝히거나 참여 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제공할 권리가 있음을 학부모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학생 기록에 포함된 그러한 설명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여 기관이 기록 또는 이의 제기된 부분을 유지 관리하는 한 학생 기록의 일부로 참여 기관에 의해 유지 관리되어야 함 **및**
2. 참여 기관에서 학생 기록 또는 이의가 제기된 부분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설명도 함께 공개되어야 함.

개인 식별 정보 공개 동의

34 CFR §300.622

정보가 교육 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가족 교육 권리 및 프라이버시 법(FERPA)에 따라 학부모 동의 없이 공개하도록 허용되지 않는 한 참여 기관 책임자 외 다른 당사자에게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에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 IDEA Part B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참여 기관 책임자에게 개인 식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는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참여 기관 책임자에게 개인 식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학부모의 동의 또는 주 법률에 따라 성년 연령에 도달한 대상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학생이 거주하는 행정 단위에 속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입학하려는 경우에는 사립 학교가 있는 행정 단위 및 거주하는 행정 단위의 책임자 간에 학생의 개인 식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학부모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보호 장치

34 CFR §300.623

각 참여 기관은 정보의 수집, 보관, 공개 및 파기 단계에서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이 유지되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각 참여 기관당 직원 1명이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 유지를 보장하는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IDEA Part B 및 가족 교육 권리 및 프라이버시 법(FERPA)에 따라 기밀 유지에 관한 주 정부의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교육 또는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각 참여 기관은 공개 조사를 위해 기관 내에서 개인 식별 정보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을 수 있는 직원의 이름 및 직위의 최신 목록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정보 파기

34 CFR §300.624

행정 단위는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 유지 관리 또는 사용되는 개인 식별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학년, 출석 기록, 소속 반, 수료 학년 및 수료 연도 등 영구적인 기록은 시간 제한 없이 유지 관리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항의 제기 절차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를 통한 항의 처리 절차와 주 정부 항의 처리 절차 간의 차이점

IDEA Part B 규정에 주 정부 항의 제기 및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별도의 항의 제기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한 것처럼 개인이나 조직은 행정 단위 또는 콜로라도 주 교육부(CDE)가 Part B 요건을 위반했음을 제기하는 주 정부에 대한 항의에 서명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만이 장애 학생의 신원 확인, 평가 또는 학교 배정, 또는 학생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 제공을 시작하거나 변경하려는 제안 또는 그에 대한 거절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DE의 주 항의 담당 책임자는 기한이 적절하게 연장되지 않는 한 60일 이내에 주 정부에 접수된 항의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반대로 행정법 판사(ALJ)는 이 문서에 해결 절차라는 제목으로 명시된 해결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를 해결하고(해결 회의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서면 결정을 발행해야 합니다. ALJ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제기 절차 기간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에 제기된 항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제기, 해결 회의 및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 절차에 대해 아래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 정부 항의 제기 절차의 채택

34 CFR §300.151

일반

CDE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절차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 다른 주의 조직이나 개인이 제출한 항의를 포함하여 항의 해결
2. CDE에 대한 항의 제출 및
3. 주의 항의 제기 절차를 학부모 및 부모 교육 및 정보 센터, 자립 생활 시설, 기타 적절한 단체를 포함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에게 광범위하게 전파

적절한 서비스 거부 시 해결책

CDE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주 항의 사항을 해결하기 CDE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의 필요를 처리하게 위한 적절한 시정 조치를 포함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및
2. 모든 장애 학생에게 향후 적절한 서비스 제공

최소한의 주 정부 항의 제기 절차

34 CFR §300.152

시간 제한 최소 절차

CDE는 항의 사항이 접수된 후 다음을 수행하기 위해 주 항의 제기 절차에 60일의 시간 제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1. CDE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독자적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함
2. 진정인에게 항의의 주장과 관련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3. 행정 단위에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항의에 답변할 기회를 제공함 (a) 기관의 선택에 따라 항의를 해결하려는 제안 및 (b) 항의를 접수한 학부모와 기관이 자발적으로 중재 절차에 참여하기로 동의할 수 있는 기회
4. 행정 단위의 IDEA Part B 요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토한 후 독자적으로 판단 및
5. 진정인에게 항의의 각 주장을 처리하고 다음 항목이 포함된 서면 결정을 발행함 (a) 결과와 결론 및 (b) CDE 최종 결정의 근거

기한 연장 최종 결정 시행

위에 명시된 CDE 절차에는 다음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60일 제한 시간의 연장 허용: (a) 특정 주 항의와 관련하여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b) 학부모 및 행정 단위나 중재 또는 대안적 분쟁 해결 수단을 통해 문제 해결 기간을 연장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관련된 다른 공공 기관.

2. 필요한 경우 다음을 비롯하여 CDE의 최종 결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포함합니다.
 - (a) 기술 지원 활동 (b) 협상 및 (c) 규정 준수를 위한 시정 조치

주 정부에 접수된 항의 사항 및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제기라는 제목으로 아래에 명시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 대상인 서면으로 작성된 주 정부 항의가 접수되거나 그 중 한 개 이상이 그러한 심의회의 일부인 여러 문제가 주 정부 항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 정부는 주 정부 항의 또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항의의 일부를 심의회가 끝날 때까지 보류해야 합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주 정부 항의의 문제는 제한 시간 및 위에 명시된 절차를 사용하여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 정부 항의로 제기된 문제가 같은 당사자(학부모 및 행정 단위)가 연루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에서 이전에 결정되었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의 결정은 그 문제와 관련하여 구속력이 있으며 CDE는 결정이 구속력이 있음을 진정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행정 단위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 결정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항의가 있는 경우 CDE가 해결해야 합니다.

항의 접수

34 CFR §300.153

조직 또는 개인은 위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주 정부 항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항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 단위가 IDEA Part B 요건 또는 그 규정을 위반했다는 진술
2. 그러한 진술의 원인이 된 사실
3. 항의를 제기한 당사자의 서명 및 연락처 정보 및
4. 특정 학생에 관해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 (a) 학생의 이름 및 거주지 주소
 - (b)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
 - (c) 무주택 학생 또는 청년의 경우 학생의 입수 가능한 연락처 정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
 - (d) 문제와 관련 있는 사실을 포함하여 학생 문제의 본질에 대한 설명 및
 - (e) 항의가 접수되었을 때 항의를 제기한 당사자가 알고 이용 가능한 한도 내에서 문제 해결 제안

항의에는 주 정부 항의 제기 절차의 채택이라는 제목으로 명시된 항의 접수 날짜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주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 정부 항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당사자가 CDE에 항의를 제기한 당시에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단위에 항의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CDE의 예외 학생 책임 부서(303 866-6694)로 전화하거나 다음의 CDE 분쟁 해결 웹 페이지를 참조하여 CDE의 주 정부 항의 제기 절차 및 양식에 관한 추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http://www.cde.state.co.us/spedlaw/info.htm>.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제기 절차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제기

34 CFR §300.507

일반

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는 학생의 신원 확인, 평가 또는 학교 배정, 또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 제공을 시작하거나 변경하도록 제안하거나 거절하는 조치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해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제기를 통해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제기의 근거가 되는 행동을 했다는 주장에 관해 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 이전의 2년 이내에 발생했던 위반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다음 이유로 인해 기한 이내에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위의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행정 단위에서 항의로 식별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잘못 표현한 경우 **또는**
2. 행정 단위가 IDEA Part B에 따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학부모를 위한 정보

학부모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를 제기하는 경우 행정 단위는 그러한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무료이거나 비용이 낮은 법률 및 관련된 기타 서비스를 학부모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34 CFR §300.508

일반

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또는 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의 변호사)는 심의회를 요청하기 위해 상대방 당사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한 항의는 아래에 나열된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 중 어느 쪽에서 항의를 제기했든 관계없이 콜로라도 주 교육부(CDE)에도 항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의의 내용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의 이름
2. 학생의 거주지 주소
3.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

4. 학생이 무주택 학생 또는 청년인 경우 학생 연락처 정보 및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
5.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포함하여 제안 또는 거절된 조치와 관련된 학생 문제의 본질에 대한 설명 **및**
6. 당시 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가 알았거나 이용할 수 있었던 문제 해결 제안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에 관한 심의회 이전 필수적인 고지

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는 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또는 그 변호사)에서 위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를 제기한 후에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정도의 항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가 진행되려면 항의가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를 접수하는 당사자(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가 지정된 행정 심의관(ALJ) 및 상대방에게 항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항의를 접수한 당사자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가 위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는 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가 충분한 것으로(위에 명시된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고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ALJ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가 위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한 후 즉시 서면으로 학부모 및 행정 단위에 고지해야 합니다.

항의 수정

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는 다음 경우에 한해 항의를 수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아래에 명시된 해결 회의를 통해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를 해결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또는**
2.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ALJ는 항의를 수정할 권한을 허가합니다.

항의를 제기한 당사자(학생 또는 행정 단위)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를 수정하는 경우 해결 회의 시간(항의 접수 후 15일 이내) 및 해결 기한(항의 접수 후 30일 이내)이 수정된 항의가 접수된 날에 다시 시작됩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에 대한 행정 단위의 답변

행정 단위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에 포함된 주제에 관계없이 사전 서면 고지라는 제목에 명시된 사전 서면 고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행정 단위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답변을 학부모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1. 행정 단위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에 언급된 조치의 수행을 제안하거나 거부한 이유에 대한 설명
2.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팀에서 고려한 다른 옵션 및 그러한 옵션이 거부된 이유에 대한 설명

3. 행정 단위에서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한 근거로 사용한 각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또는 보고에 대한 설명 및

4. 행정 단위의 제안된 조치 또는 거부된 조치와 관련된 기타 요인에 대한 설명

위 1-4항의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행정 단위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가 충분하지 않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에 대한 행정 단위 답변이라는 바로 위 소제목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를 접수한 당사자는 항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항의의 각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는 답변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및 심의회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의 학교 배정

34 CFR §300.518

장애 아동 징계 시 절차 라는 제목으로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송된 후 해결 절차 기간이 진행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 또는 법원 절차에 따른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학생은 현재 배정된 교육구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에 공립학교 최초 입학 신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얻어 그러한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정규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에 IDEA Part C에서 Part B에 따른 교육 제공으로 전환 중인 아동이나 만 3세가 되어 더 이상 Part C 교육 서비스 대상이 아닌 아동의 IDEA Part B에 따른 최초 서비스 신청이 포함되는 경우 행정 단위는 아동이 받은 Part C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동이 IDEA Part B 적용 대상이며 아동이 처음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학부모가 동의한 다음 절차에 따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행정 단위는 논의 중 상태가 아니라 학부모 및 행정 단위가 모두 동의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CDE에서 수행되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를 주관하는 행정 심의관이 학교 배정 변경이 적절한 것으로 동의하는 경우 변경되는 배정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 또는 법원 절차에 따른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아동이 재학 중인 현재의 학교 배정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양식의 예

34 CFR §300.509

CDE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및 주 정부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양식의 예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CDE 또는 행정 단위는 학부모가 그러한 양식의 예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학부모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또는 주 정부 항의를 제기할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한 이 양식이나 다른 적절한 양식의 예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DE의 주 정부 항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및 중재용 양식의 예는 CDE의 예외 학생 책임 부서 (303 866-6694)로 전화하거나 다음의 CDE 분쟁 해결 웹 페이지를 방문하여 획득할 수 있습니다.
<http://www.cde.state.co.us/spedlaw/info.htm>.

중재

34 CFR §300.506

일반

학부모 및 행정 단위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제기에 앞서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한 IDEA Part B에 따른 모든 문제가 포함된 의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를 제기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IDEA Part B에 따른 의견 충돌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

절차를 통해 중재 절차가 다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 측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2. 학부모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 요청 권리를 부인 또는 연기하거나 학부모가 IDEA Part B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권리를 거부하는 데 사용되지 **않음** 및
3. 효과적인 중재 기술을 훈련 받은 자격이 있는 공정한 중재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행정 단위는 중재 절차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학부모와 학교에 편리한 시간 및 장소에서 사심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다음과 같은 상대를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1. 적절한 대안적 분쟁 해결 기관 또는 주 소재 부모 교육 및 정보 센터나 커뮤니티 부모 자원 센터와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 및
2. 학부모에게 중재 절차의 이점을 설명하고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사람.

CDE는 자격이 있으며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중재인의 목록을 유지 관리합니다. 무작위 순환 방식 또는 기타 공정한 근거에 의해 중재인이 지정됩니다.

CDE는 중재인 비용을 부담합니다. 중재 절차 중 각 회의는 적절한 시간을 잡아서 학부모 및 행정 단위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부모 및 행정 단위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모두 다음에 해당하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서면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1. 학부모 및 행정 단위의 모든 합의 사항을 명시함
2.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했던 모든 논의는 기밀로 유지되고 이후의 모든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 또는 민사 소송 절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함 및
3. 학부모 및 행정 단위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행정 단위의 대리인 모두가 서명함

서면으로 작성 후 서명한 중재 합의서는 권한이 있는 관할권을 보유한 주 법원(이러한 사례 유형을 심리할 수 있는 주 법률에 따른 권한이 있는 법원) 또는 미국 지방 법원에서 강제력을 지닙니다.

중재 절차 중에 발생한 논의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 또는 연방 법원이나 IDEA Part B에 따라 지원을 받는 주의 주 법원의 민사 소송 절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재인의 공정성

중재인의 요건:

1. CDE 또는 아동의 교육이나 보육에 관련된 행정 단위의 직원이 아닐 것 **및**
2. 중재인의 객관성과 충돌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음.

CDE의 직원은 그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주체가 CDE라는 이유만으로도 중재인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해결 절차

34 CFR §300.510

해결 회의

행정 단위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가 시작되기 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의 접수 고지 후 15일 이내에 학부모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로 식별된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팀의 관련 구성원 간의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회의 요건:

1. 행정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행정 단위의 대리인이 참석해야 함 **및**
2. 학부모가 변호사와 동행하지 않는 한 행정 단위의 변호사가 참석할 수 없음

학부모와 행정 단위는 회의에 참석할 IEP 팀의 관련 직원을 결정합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와 그러한 항의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행정 단위가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해결 회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학부모와 행정 단위가 회의를 포기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또는**
2. 학부모와 행정 단위가 **중재**라는 제목 아래에 명시된 중재 절차를 사용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해결 기간

행정 단위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를 그러한 항의가 접수되고 30일 이내(해결 절차 기간 동안)에 만족할 정도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발표하기 위한 45일의 기한은 30일 해결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시작되며 아래 명시된 대로 30일의 해결 기간이 조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학부모와 행정 단위 모두가 해결 절차를 포기하거나 중재 절차를 사용하기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해결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해결 회의에 참석하기로 동의할 때까지 해결 절차 및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 기한이 연기됩니다.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한 노력을 기록한 후에도 해결 회의에 학부모의 참여를 구할 수 없는 경우 행정 단위는 30일의 해결 기간이 종료된 후 ALJ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를 기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대한 기록에 상호 합의한 시간 및 장소를 마련하려는 행정 단위의 노력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전화 통화 또는 통화 시도 및 통화 결과에 대한 자세한 기록
2. 학부모에게 발송된 서신과 반송된 답변의 사본 **및**
3. 학생 가정 또는 부모 직장 방문 및 그러한 방문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기록

행정 단위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의 접수 고지 후 15일 이내에 해결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거나 해결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ALJ에게 45일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 기한이 시작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해결 기간의 조정

학부모와 행정 단위가 해결 기간을 포기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하면 45일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 기한이 익일에 시작됩니다.

중재 또는 해결 회의 기한이 시작된 후 30일 해결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학부모와 행정 단위가 서면으로 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동의하는 경우 45일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 기한이 익일에 시작됩니다.

학부모와 행정 단위가 30일 해결 기간이 종료될 무렵 중재 절차를 사용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중재를 계속 수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 중 어느 한 쪽이 중재 절차를 취소하는 경우 45일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 기한이 익일에 시작됩니다.

서면 합의

해결 회의에서 분쟁의 해결에 이른 경우 학부모와 행정 단위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서면 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1. 학부모와 행정 단위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행정 단위 대리인의 서명 **및**
2. 권한이 있는 관할권을 보유한 주 법원(이러한 사례 유형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주 법원) 또는 미국 지방 법원에서 강제력을 지님

합의서 검토 기간

학부모와 행정 단위가 해결 회의 결과 합의서를 체결하는 경우 각 당사자(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는 학부모와 행정 단위가 모두 합의서에 서명한 때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에 관한 심의회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

34 CFR §300.511

일반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를 작성할 때마다 분쟁에 연루된 학부모나 행정 단위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제기 및 해결 절차** 섹션에 나온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를 요구할 기회가 생깁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기관

이 섹션에 나온 심의회는 순환 방식으로 지정된 행정 심의관을 통해 콜로라도 주 교육부(CDE) 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행정 심의관(ALJ)

ALJ의 최소한의 요건:

1. CDE 또는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에 관련된 행정 단위의 직원이 아닐 것
2. 심의회에서 ALJ의 객관적 입장과 충돌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음
3. 지식이 풍부하고 IDEA 조항, IDEA와 관련된 연방 및 주 정부 규정, 연방 및 주 법원의 IDEA 법령 해석을 이해할 것 **및**
4. 심의회를 진행하고, 적절한 표준 법률 관행과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를 기록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이 있어야 함

CDE는 ALJ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자의 목록과 ALJ별 자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목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의 주제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를 요청하는 당사자(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는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항의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를 심의회에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심의회 요청 기한

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는 항의에 언급된 문제에 대해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에 관한 심의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기한의 예외

다음 이유로 인해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경우 위의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행정 단위가 항의에 언급하려는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잘못 표현한 경우 **또는**

2. 행정 단위가 IDEA Part B에 따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심의회 권리

34 CFR §300.512

일반

귀하에게는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에서 자신을 대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징계 절차 관련 심의회 포함) 또는 이의 제기 당사자는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공정한 검토**라는 소제목 문서에서 명시된 대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1. 변호사 및/또는 장애 아동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교육을 받은 개인을 동행하여 자문을 받을 권리. 단 콜로라도 주의 경우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허가를 받은 대리인만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에서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2. 증거를 제출하고, 대질하고, 반대 심문하고 증인 출석을 요구할 권리
3. 심의회가 시작되기 최소 5일 전에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심의회에서 제시하지 못하게 할 권리
4. 서면이나 전자적 형태(선택하는 경우)로 심의회에서 언급된 내용 그대로의 기록을 획득할 권리 **및**
5. 서면이나 전자적 형태(선택하는 경우)로 발견한 사실 또는 결정을 입수할 권리

정보 추가 공개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가 시작되기 최소 5일(영업일 기준) 전에 학부모와 행정 단위는 심의회에서 사용할 그 날까지 완료된 모든 평가와 그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권고 사항을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ALJ는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관련 평가 또는 권고 사항을 심의회에 소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학부모의 권리

다음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1. 심의회 대상인 학생이 참석하게 할 권리
2. 심의회를 대중에게 공개할 권리 **및**
3. 심의회 기록, 결과 및 결정 사항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권리

심의회 결정

34 CFR §300.513

행정 심의관(ALJ)의 결정

학생이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ALJ의 결정은 실질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절차를 위반했음을 주장하는 문제에서 ALJ는 다음과 같이 절차상 부적절한 경우에만 학생이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을 받지 않았음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1. FAPE에 대한 학생의 권리를 간섭하는 행위

2. 학생에 대한 FAPE 제공에 관한 의사 결정 절차에 참여할 학부모의 기회를 크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3. 교육적 혜택의 박탈을 초래하는 행위

위에 명시된 조항은 ALJ가 행정 단위가 IDEA Part B에 따른 연방 규정의 절차상 보호 장치 섹션 (34 CFR §§300.500 ~ 300.536)의 요건을 준수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에 대한 별도의 요청

IDEA Part B에 따른 연방 규정의 절차상 보호 장치 섹션(34CFR §§300.500 ~ 300.536)의 내용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미 제기된 항의와는 별개인 문제에 관해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별도의 항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주 특수 교육 자문 위원회 및 일반 대중에 대한 결과 및 결정

CDE는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한 후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주 특수 교육 자문 위원회에 결과와 결정 제출 및
2. 그러한 결과와 결정을 대중에게 공개

최종 결정

34 CFR §300.514

심의회를 통해 얻은 변경할 수 없는 최종 결정

심의회에 참여했던 당사자(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가 다음 제목으로 아래에 명시된 대로 민사 소송을 통해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 (징계 절차 관련 심의회 포함)에서 내려진 결정은 변경할 수 없는 최종 결정입니다. **민사 소송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심의회 기한 및 편의성

34 CFR §300.515

행정 단위는 30일간의 해결 회의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또는 30일 해결 기간의 조정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명시된 대로 조정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다음이 수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에서 최종 결론에 도달함 및
2. 결정 사항을 기재한 사본이 학부모와 행정 단위에 우편으로 발송됨

말로 하는 언쟁이 수반되는 심의회는 학부모와 학생이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 및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민사 소송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34 CFR §300.516

일반

ALJ의 심의회(정계 절차와 관련하여 신속 처리된 심의회 포함) 결론 및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는 심의회 주제가 되었던 문제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논쟁 중인 요지에 관계없이 권한이 있는 관할권을 보유한 주 법원(이러한 사례 유형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주 법원) 또는 미국 지방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최초의 항의를 제기한 당사자(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 또는 항의에 대해 답변하는 당사자 중 누구라도 ALJ의 결정 날짜로부터 최대 90일의 기간 동안 민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절차

민사 소송 중 법원의 역할:

1. 행정 소송 절차에 대한 기록 확보
2. 학부모 요청 또는 행정 단위의 요청에 따른 추가 증거 심리 **및**
3. 증거의 우세함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구제를 인정

지방 법원 관할권

미국 지방 법원은 논쟁 중인 요지에 관계없이 IDEA Part B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구성 규칙 - 소진

IDEA Part B 조항은 미국 헌법, 장애 미국인 법(1990), 재활법(1973) V편(504절) 또는 장애 아동의 권리 보호에 관한 기타 연방 법률에 따라 적용 가능한 권리, 절차 및 구제 수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단, IDEA Part B에 따라 적용 가능한 구제를 추가하는 민사 소송을 이 법률에 따라 제기하기 전에 위에 명시된 정당한 절차를 당사자가, IDEA Part B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필요한 것과 같은 정보로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용 가능한 구제 조치가 IDEA에 따른 구제조치와 중복되더라도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조치를 추구하여 법원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IDEA에 따라 적용 가능한 행정상의 구제 조치 (예: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제기, 해결 회의 및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를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

34 CFR §300.517

일반

IDEA Part B에 따라 제기된 소송이나 법적 절차에서 학부모가 승리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학부모의 비용 중 일부인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IDEA Part B를 근거로 제기된 소송이나 법적 절차에서 학부모의 변호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예: 주 또는 지방 법원)은 재량으로 승리하는 주 교육 기관 또는 행정 단위의 비용 일부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 보수를 학부모의 변호사가 지불하도록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a) 항의 또는 법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무고이거나, 부당하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또는 (b) 소송이 무고이거나, 부당하거나, 근거가 없음이 명확해진 후에도 소송을 지속하는 경우 **또는**

IDEA Part B를 근거로 제기된 소송이나 법적 절차에서 학부모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 요청이나 이후의 민사 소송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소송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의 부도덕한 목적으로 제기된 경우 법원(예: 주 또는 지방 법원)은 재량으로 승리하는 주 교육 기관이나 행정 단위의 비용 일부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 보수를 학부모나 학부모의 변호사가 지불하도록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수의 지급

법원은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 보수에 대한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1.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 및 품질과 관련하여 소송 또는 심의회가 제기된 지역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요율을 기준으로 정해진 보수 지급되는 보수를 계산할 때에는 보너스나 승수를 사용할 수 없음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학부모에게 합의 제의가 이루어진 후에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IDEA Part B에 따른 소송이나 법적 절차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할 수 없으며 관련 비용 또한 변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68호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아니면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 회의 절차가 시작되기 10일 전에 언제라도 합의 제의가 이루어진 경우
 - b. 10일 이내에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및**
 - c. 학부모가 최종적으로 확보한 구제조치가 합의 제의에 비해 학부모 측에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이나 ALJ가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우세하고 합의 제의에 대한 거부가 대체로 정당한 것으로 판명 되는 경우 학부모에 대한 변호사 보수 및 관련 비용의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IEP) 팀과의 회의의 경우 행정 소송 절차나 법정 소송의 결과로 회의가 열리지 않는 한 그와 관련된 보수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중재**라는 제목으로 명시된 중재와 관련된 보수의 경우에도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해결 절차라는 제목으로 명시된 해결 회의는 행정 기관의 심의회나 법정 소송의 결과로 소집된 회의로 간주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변호사 보수의 지급이라는 목적에 해당하는 행정 기관의 심의회나 법정 소송으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IDEA Part B 규정에 따라 지급 명령이 내려진 변호사 보수 총액을 감액합니다.

1. 학부모 또는 학부모의 변호사가 소송 또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분쟁의 최종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 시킴
2. 달리 기관에 의해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변호사 보수 총액이 변호사가 합리적으로 유사한 정도의 기술, 평판 및 경험을 통해 제공한 유사 서비스에 대해 지역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시급을 부당하게 초과함
3. 소요된 시간 및 제공된 법률 서비스가 소송 또는 절차의 성질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많음 **또는**

4. 학부모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제기**라는 제목으로 명시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요청 고지에 나온 적절한 정보를 행정 단위에 제공하지 않음

그러나 법원은 주 또는 행정 단위가 소송이나 절차의 최종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켰거나 IDEA Part B의 절차상 보호 장치 조항에 의한 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장애 아동 징계 시 절차

학교 교직원의 권한 34 CFR §300.530

사례별 결정

교직원은 학교의 학생 행동 규칙을 위반하는 장애 학생에 대해 배정 변경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때 규율과 관련된 다음 요건에 따라 만들어진 각 사례별 기준을 근거로 고유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

비장애인 학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교직원은 연속 **10일(수업일수 기준)**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학생 행동 규칙을 위반하는 장애 학생을 현재 배정된 학교에서 적절한 임시의 대안적 교육 환경(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팀에서 결정)이나 다른 학교로 배치하거나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교직원은 별개의 비행 사건에 대해 동일 학년도에서 연속 **10일(수업일수 기준)**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학생에 대한 추가 이동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단, 그러한 이동 처분이 배정 학교 변경(정의를 보려면 아래의 **징계 이동으로 인한 배정 학교 변경** 참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 학생이 동일 학년도에서 총 **10일(수업일수 기준)** 동안 현재의 교육구에서 이동 처분을 받으면 행정 단위는 해당 학년도에서 이후의 이동 처분 기간 동안 아래 **서비스**라는 소제목에 명시된 필요한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 권한

학생 행동 규칙을 위반한 행동이 학생의 장애에 대한 발현(아래 **발현에 대한 결정** 참조)이 아니고 징계적 배정 학교 변경이 연속 **10일(수업일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교직원은 비장애인 학생에 대해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장애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는 아래에 **서비스**에 명시된 서비스를 해당 학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의 IEP 팀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임시의 대안적 교육 환경을 결정합니다.

서비스

현재의 학교에서 이동 처분이 내려진 장애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가 임시의 대안적 교육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행정 단위는 비슷한 이동 처분을 받은 비장애인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동일 학년도에 **최대 10일(수업일수 기준)이나 그보다 짧은 기간** 동안 현재의 배정 학교에서 이동 처분을 받은 장애 학생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단기정확으로 이동 처분을 받은 비장애인

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학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학 처분을 내린 기관은 정학 기간 이후 학생이 다시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정학 기간 동안 학교 수업을 보충할 기회를 모든 학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22-33-105(3)(d)(III), C.R.S.**

현재의 배정 학교에서 **10일(수업일수 기준)** 이상 이동 처분을 받은 장애 학생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다른 환경에서도 학생이 계속 일반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학생의 IEP에 명시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및**
2. 위반 행동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그러한 행동을 다루도록 만들어진 기능적 행동 평가와 행동 조절 서비스 및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 학생이 동일 학년도에 **10일(수업일수 기준)** 동안 현재의 배정 학교에서 이동 처분을 받고 **현재의** 이동 처분 기간이 연속 **10일(수업일수 기준)** 이거나 그보다 짧은 기간이며 이동 처분이 배정 학교의 변경(아래의 정의 참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직원들은 학생을 담당하는 한 명 이상의 교사와 상의하여 학생이 다른 환경에서도 일반 교육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학생의 IEP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동 처분이 배정 학교의 변경(아래 정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의 IEP 팀은 학생이 다른 환경에서도 일반 교육 과정에 계속 참여하고 학생의 IEP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발현에 대한 결정

학생 행동 규칙 위반(연속 **10일(수업일수 기준)**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 동안의 이동 처분 및 교육구 변경이 아닌 경우를 제외함)을 이유로 장애 학생의 교육구 변경 결정이 내려지고 **10일(수업일수 기준)** 이내에 행정 단위, 학부모 및 IEP 팀의 관련 담당자(학부모와 행정 단위에서 결정)는 학생의 IEP, 교사의 관찰, 학부모가 제출한 관련 정보 등 학생 파일의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토하여 다음을 판단해야 합니다.

1. 문제의 행동이 학생의 장애로 인해 발생했거나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지 **또는**
2. 문제의 행동이 행정 단위에서 학생의 IEP를 시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에 해당하는지

행정 단위, 학부모 및 학생 IEP 팀의 관련 담당자가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행동은 학생의 장애의 발현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행정 단위, 학부모 및 학생 IEP 팀의 관련 담당자가 문제의 행동이 행정 단위에서 IEP를 시행하지 않아서 생긴 직접적인 결과라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 단위는 그러한 결여를 교정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학생의 행동이 장애의 발현이라는 결정

행정 단위, 학부모 및 IEP 팀의 관련 담당자가 학생의 행동이 장애의 발현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IEP 팀은 다음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1. 교육구 변경을 초래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행정 단위에서 기능적 행동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를 수행하고 학생에게 적합한 행동 조절 계획 시행 **또는**

2. 행동 조절 계획이 이미 수립되었다면 행동에 대해 다루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립된 행동 조절 계획을 검토 및 수정

특수 상황이라는 소제목으로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학부모와 교육구가 행동 조절 계획 수정의 일환으로 교육구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행정 단위는 학생이 이동 처분을 받은 원래의 교육구로 학생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특수 상황

학생의 행동이 장애의 발현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학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교직원은 최대 45일(수업일수 기준) 동안 임시의 대안적 교육 환경(학생의 IEP 팀에서 결정)으로 학생을 이동 조치 할 수 있습니다.

1. 학교에 무기(아래 정의 참조)를 가져가거나 수업 중, 학교 구내나 CDE 또는 행정 단위의 관할권에 속하는 학교 행사에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
2. 수업 중, 학교 구내나 CDE 또는 행정 단위의 관할권에 속하는 학교 행사에서 고의로 불법 약물(아래 정의 참조)을 소지하거나 사용, 아니면 관리 약물(아래 정의 참조)을 판매하거나 구하려고 한 경우 **또는**
3. 수업 중, 학교 구내나 CDE 또는 행정 단위의 관할권에 속하는 학교 행사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심한 부상(아래 정의 참조)을 입힌 경우

정의

관리 약물이란 관리 대상 의약품법(21 U.S.C. 812(c)) 202(c)조항의 I, II, III, IV, V급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된 약물이나 기타 물질을 말합니다.

불법 약물이란 관리 약물을 말하지만 허가 받은 전문 의료인의 관리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소지 또는 사용 가능하거나 관리 대상 의약품법이나 연방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다른 기관의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소지 또는 사용 가능한 관리 약물은 제외됩니다.

심한 신체 부상이란 미 연방 법전 18편 1365절 세부 항목 (h)의 (3)단락에 따른 “심한 신체 부상”이라는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지닙니다.

무기란 미 연방 법전 18편 930절 첫 번째 세부 항목 (g)의 (2)단락에 따른 “위험한 무기”라는 용어에 이미 정해진 의미를 가집니다.

통지

학생 행동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학생의 교육구가 변경되는 이동을 수행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는 날에 행정 단위는 학부모에게 그러한 결정에 대해 알리고 절차상 보호 장치 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징계 이동으로 인한 학교 배정 변경

34 CFR §300.536

장애 아동을 현재의 교육구로부터 이동하는 조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학교 배정 변경**에 해당합니다.

1. 이동 기간이 연속 10일(수업일수 기준)을 초과함 **또는**
2. 학생이 다음의 이유로 패턴이 형성될 만큼 일련의 이동 처분을 받음
 - a. 연속된 이동 처분 일수가 한 학년도에서 총 10일(수업일수 기준)을 넘기 때문

- b. 학생의 행동이 연속된 이동 처분을 초래한 이전 사건에서 학생의 행동과 대체로 유사하기 때문 **및**
- c. 각 이동 처분 기간, 학생이 이동 처분을 받은 총 시간 및 이동 처분 간의 시간적 근접 같은 추가 요인 때문

이동 처분 패턴이 교육구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 단위에서 정한 사례별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른 절차 및 사법 절차를 통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의 결정

34 CFR § 300.531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팀은 **교육구 변경**에 해당하는 이동 처분 및 위의 **추가 권한** 및 **특수 상황** 제목 아래의 이동 처분과 관련된 임시의 대안적인 교육 환경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속 처리된 심의회 절차)

34 CFR § 300.532

일반

다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를 요청하는 항의를 제기(위의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제기 절차** 참조)할 수 있습니다.

1. 규율 조항에 따라 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결정 **또는**
2. 위에 명시된 발현에 대한 결정

행정 단위에서도 학생의 현 학교 배정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학생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를 요청하는 항의를 접수(위 내용 참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의관(ALJ)의 권한

행정 심의관이라는 소제목으로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ALJ는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를 진행한 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ALJ의 권한:

1. ALJ가 이동 처분이 **학교 교직원의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명시된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거나 학생의 행동이 장애의 발현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장애 학생을 이동 처분을 받은 원래의 교육구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2. ALJ가 학생의 현 교육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학생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45일**(수업일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장애 학생을 임시의 대안적 교육 환경으로 이동 조치하는 교육구 변경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 단위에서 학생을 원래의 교육구로 돌려보낼 경우 학생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심의회 절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또는 행정 단위에서 그러한 심의회를 요청하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를 제기할 때마다 다음 신속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제기 절차와 제기된 항의에 관한 심의회**라는 제목으로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심의회가 열려야 합니다.

1. CDE는 심의회를 요구하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한 날짜로부터 **20일**(수업일수 기준) 이내에 열려야 하는 신속 처리된 심의회를 준비해야 하며 ALJ는 심의회 개최 후 **10일**(수업일수 기준)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2. 학부모와 행정 단위가 회의를 포기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중재 절차를 사용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가 접수되었다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결 회의를 열려야 합니다.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항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심의회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주 정부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 처리되는 심의회에 대해 다른 심의회에 관해 제정된 규칙과 다른 절차상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칙은 기한을 제외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에 관해 이 문서에 명시된 규칙과 일치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다른 심의회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속 처리된 심의회에서 ALJ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의 **이의 제기** 참조).

이의 제기 기간 동안 학교 배정

34 CFR §300.533

위에 명시된 대로 학부모나 행정 단위에서 징계 문제와 관련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한 경우 학부모와 행정 단위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학생은 ALJ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니면 **학교 교직원의 권한**이라는 제목에 명시된 대로 학생에게 내려진 이동 처분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어느 쪽이든 더 빠른 시점까지) 임시의 대안적 교육 환경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직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대상이 아닌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34 CFR §300.534

일반

학생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행동 규칙을 위반했는데 징계 조치를 유발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학생이 장애 아동임을 행정 단위에서 알고 있었던 경우 학생은 본 고지에 명시된 보호 조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 문제 관련 인지의 근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조치를 초래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학생이 장애 아동임을 행정 단위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1. 학부모가 자녀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적절한 교육 기관의 감독 또는 관리 직원이나 학생의 교사에게 서면으로 전달한 경우
2. 학부모가 IDEA Part B에 따른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평가를 요청한 경우 **또는**
3. 학생의 교사 또는 다른 행정 단위 직원이 학생이 보여준 행동 패턴에 관한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행정 단위의 특수 교육 책임자나 행정 단위의 다른 감독 직원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 단위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평가를 허락하지 않았거나 특수 교육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 **또는**
2. 학생이 평가를 받은 후 IDEA Part B에 따른 장애 아동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인지 근거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조건

학생에게 불리한 징계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징계 문제 관련 인지의 근거 및 예외라는 소제목으로 위에 명시된 대로 학생이 장애 아동임을 행정 단위에서 알지 못했던 경우 학생은 비슷한 행동에 관련된 비장애 학생에게 적용되는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징계 조치를 받는 기간 동안 학생에 대한 평가가 요청되면 신속하게 평가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학교 당국에서 정한 교육 환경에 남아 있으며 여기에는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정확이나 퇴학이 포함됩니다.

행정 단위에서 수행한 평가 정보 및 학부모가 제출한 정보를 고려할 때 학생이 장애 아동으로 판단되는 경우 행정 단위에서 위에 명시된 징계 요건을 포함하여 IDEA Part B에 따른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 집행 기관 및 사법 당국으로 위탁 및 해당 기관의 조치

34 CFR §300.535

IDEA Part B 조항으로도 다음의 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1. 기관에서 장애 학생이 저지른 범죄를 해당 감독 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는**
2. 주의 법률 집행 기관 및 사법 당국이 장애 아동이 저지른 범죄에 연방 및 주 법률 적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기록의 전송

행정 단위에서 장애 아동이 저지른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행정 단위는

1. 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보고하는 관련 당국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수 교육 및 징계 기록 사본을 전송해야 함 **및**
2. 가족 교육 권리 및 프라이버시 법 (FERPA)에 허용된 범위 이내에서만 학생의 특수 교육 및 징계 기록의 사본을 전송할 수 있음.

학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학생을 사립 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정하기 위한 요건

일반

34 CFR §300.148

IDEA Part B에는 행정 단위에서 학생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을 제공하고 학부모가 사립 학교 또는 시설에 자녀를 입학시키기로 선택하는 경우 사립 학교 또는 시설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교육 비용을 행정 단위에서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립 학교가 위치한 행정 단위의 34 CFR §§300.131 ~ 300.144에 따라 부모가 사립 학교에 배정한 학생에 관한 Part B조항에 따라 필요 사항을 해결해야 할 인구 집단에 학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 배정 비용의 변제

학생이 행정 단위의 감독 당국에 속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이전에 받고 행정 단위의 동의 또는 위탁 없이 사설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자녀를 등록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법원이나 행정 심의관(ALJ)이 사설 교육 기관에 등록하기 전에 기관에서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을 적절한 때에 아동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설 기관에의 배정이 적절함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 단위에서 그러한 등록에 대한 비용을 학부모에게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배정이 CDE 및 행정 단위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적용되는 주 정부 표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ALJ 또는 법원은 학부모의 배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상 제한

위 단락에 명시된 배상 비용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되거나 비용 상환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해당 경우: (a) 공립학교에서 자녀를 이동 조치하기 전에 학부모가 참석했던 가장 최근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회의 시 학부모의 우려와 자녀를 공공 비용으로 사립학교에 등록하겠다는 의도를 언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행정 단위가 자녀에게 FAPE를 제공할 것임을 제안한 배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IEP 팀에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b)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이동 조치하기 최소한 10일 전(업무일에 있었던 휴가 포함)에 그러한 정보를 행정 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2.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이동 조치하기 전에 행정 단위에서 학생을 평가하려는 의도(적절하고 합리적인 평가의 목적에 대한 설명 포함)를 사전에 서면으로 학부모에게 고지했지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가 자녀를 데려오지 않은 경우 **또는**
3. 학부모의 행동이 불합리하다는 법원의 판결.

그러나 상환 비용은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감액되거나 지급이 거절되면 안 됩니다. (a) 행정 단위에서 학부모가 통지하지 못하도록 막은 경우 (b) 위에 명시된 통지를 제공해야 할 학부모의 책임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c) 위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자녀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및**
2. 법원이나 ALJ의 재량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학부모가 요구된 통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감액 또는 지급이 거부될 수 없습니다. (a) 학부모가 글을 읽고 쓰지 못하거나 영어로 문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b) 요건을 준수 함으로써 자녀에게 정서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부모용 자료

IDEA 2004

장애인 교육법(IDEA)이란 연방 내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IDEA는 주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 법률 적용 대상인 650만 명 이상의 장애가 있는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에게 조기 조정,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제공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장애가 있는 영유아(출생-2)와 그 가족은 다음 조항에 의거하여 조기 조정 서비스를 받습니다.

IDEA Part C. 아동 및 청년(3-21세)은 IDEA Part B를 근거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http://idea.ed.gov/>

콜로라도 주 교육부

예외 학생 책임 부서 웹사이트는 교사, 관리자와 장애, 영재성, 특이한 재능으로 인해 예외적 교육의 필요가 있는 학생이나 특수한 요구를 가지는 영어권 학습자의 학부모를 위한 자원입니다.

콜로라도 주 교육부, 예외 학생 책임 부서, 갈등분쟁사무국, 1560 Broadway, Suite 1175, Denver, CO 80202

www.cde.state.co.us/cdesped/index.asp 303-866-6694

특수교육법 웹 페이지는 콜로라도 주 특수교육법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심의회 및 연방 정부에 대한 항의 제기와 관련된 특수교육법 브로셔와 결정 사항을 찾아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특수 아동 교육법의 법 집행을 위한 행정용 규칙(주의 특수 교육 규칙)의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http://www.cde.state.co.us/spedlaw/index.htm>

Early Childhood Connections

Early Childhood Connections란 장애인 교육법에 따른 콜로라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니셔티브입니다. Early Childhood Connections는 기관 간 이니셔티브입니다. 이니셔티브의 실행을 위한 책임 기관은 콜로라도 주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입니다.

www.earlychildhoodconnections.org

1-877-777-4041

PEAK Parent Center

PEAK Parent Center는 연방 정부에서 지정한 콜로라도 주의 부모 교육 및 정보(PTI) 센터입니다.

PEAK는 상담 전화, 워크샵, 회의, 웹사이트 및 출판물 등의 서비스를 통해 가족 및 다른 사람들 지원합니다. PEAK는 PTI의 수단으로 부모들 간의 지원을 제공하지만 지지 집단 모임은 주최하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일대일로 상담하며 아동의 성과가 개선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해 주 정부 및 교육, 재활 및 의료계와도 협력합니다.

www.peakparent.org 1-800-284-0251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법률 센터

법률 센터는 민권 및 차별 관련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공익을 위한 독자적 비영리 기관으로 콜로라도 주 전체의 정신적/신체적 장애인, HIV 보균자 및 노인의 인권, 민권 및 법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www.thelegalcenter.org

1-800-288-1376